

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하수종말처리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은 제안사유를 검토한 결과 위치선정 등은 생활하수만 처리하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후 축산폐수 등 종합처리하는 분뇨, 축산폐수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의 악취로 인근마을 거류면 가려리 송정리와 고성읍 죽동마을 주민과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의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신중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.

## 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공사가 착공상태에서 의견청취가 가능한지
- 답 : 사전에 결정의견을 받아야 하나 예산등 부지확보 등으로 인해 늦게 요청되어 죄송함.
- 문 : 공사시행의 문제점은
- 답 : 예산문제는 별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함.
- 문 : 기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 및 시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
- 답 : 기존 시설결정은 원상태로 회복이 될 것임.

- 7. 토 론 : 시설변경 결정없이 선 입지선정과 공사착공후 시설결정 의견요청에 따른 집행부의 질책

## 8. 심사결과

- 1998. 11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불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기로 의결하였음.  
※ 고성군의회건의서 : 별첨

# 고성군의회의견서

제 목	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요청안
<p data-bbox="197 721 440 776">□ 의 견</p> <p data-bbox="284 849 1369 1256">고성도시계획에 기히 결정되어 있던 고성 하수종말 처리장은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위치와 주변 여건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금번 하수와 축산폐수, 분뇨 등 종합처리장으로 변경 결정 시설하므로서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봄.</p> <p data-bbox="596 1506 1002 1561">1998년 11월 7일</p> <p data-bbox="284 1727 1310 1798">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</p>	